

報道資料

이 資料는 국무회의시(2001年 3月 5日 10:00
예정)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제목: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

主要內容

- 부실기업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책임추궁기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('00.12.30)
 - 정부는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3.5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였음

< ※ 참고: 개정 예금자보호법의 주요내용 >

- 예금보험공사가 채권금융기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부실기업을 포함하고, 부실기업에 대한 예보의 조사권을 신설
- 금융사고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임직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

-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
① 부실기업 조사를 위한 방법·절차 등 규정

-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자(차주기업 포함)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장부, 서류, 기타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

//

② 임직원 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 등

- 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을 원칙적으로 모든 부보금융기관으로 하되, 재무 및 경영상황이 우수한 부보금융기관* 등은 제외

* 경영실태평가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인 부보금융기관 등으로서 구체적 기준은 예보 운영위원회가 정함

- 가입대상인 부보금융기관은 예보가 요구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되, 위원회가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*에는 그 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

* 부보금융기관의 경영여건과 배상책임보험의 시장현황 등을 감안

-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금보험료의 일부(최대 20%)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

③ 서울보증보험의 부보금융기관 자격 연장

- 금년부터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하기로 되었던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금년말까지* 부보금융기관의 자격을 연장

- 대우회사채 대지급소요 등 이미 반영된 공적자금 지원 소요가 금년말까지 단계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

* 입법기술상 일단 부보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하고 추후 시행령을 재개정하여 2002년부터 부보대상에서 제외할 예정

보도자료 생산과: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 전화: 503-9254~5
과장 윤용로 담당 사무관 이세훈

재정경제부 공보관